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3월 2일, 박용수 의원 등 35명
상정일자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3월 22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개정내용	○ 주거안정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1인 가구를 추가함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일
도시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3월 2일, 박용수 의원 등 35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18년 3월 22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재만 의원)

가. 개정이유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 주거안정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1인 가구에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 나. 주거안정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1인 가구를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7호).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복승규)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7호에서 “1인 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한 것은 최근 증가하는 가족분화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주거종합계획상에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대비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지난 제325회기에 통과되어 3월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경기도 조례 제5865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조문의 변경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 제출 이후에 공포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경기도 조례 제5865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을 정비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정비함

※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 [별첨 1]

8. 첨부서류

- 조례안(수정안 포함) ----- [별첨 2]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3월 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가. 수정이유

- 개정안 제출 이후에 공포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경기도 조례 제5865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을 정비하기 위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정비함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7.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8. (현행과 같음) 9. (개정안 제7호와 같음)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을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1인 가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u>“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u>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u>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 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8. ~ 1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u>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1인 가구</u> ----- ----- -----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